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1766
------------	------

발의연월일 : 2008. 11. 3 .
발 의 자 : 이민근 의원
외 9 인

1.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불법대리운전, 불법양도양수, 승차거부, 무면허택시, 화물기준 위반에 대하여 신고토록 신고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을 둠(안 제5조).
- 라. 신고자 및 신고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신고인의 보호 규정을 둠(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시흥시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
2. 운송사업자 :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인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치 받아 운행도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밴형화물자동차(콜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한다.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2조의 규정 위반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 위반

3.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 법 제14조의 규정 위반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개인택시의 운수종사자

5. 무면허 개인택시 : 법 제4조의 규정 위반

6. 밴형화물자동차(콜밴)의 화물기준 위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규정 위반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 심사절차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③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代理人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이 안산시 내에 거주(주민등록상) 하지 않는 경우
6. 신고차량이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7. 신고인 1인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제6조(신고자)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사항은 별지 1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비 고
1.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0,000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200,000	
3. 개인택시 불법 양도 · 양수	300,000	
4. 법인 · 개인택시의 승차거부	50,000	
5.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	
6.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기준 위반	50,000	

(별지 제1호 서식)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대장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진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운송사업자 :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운수종사자 :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인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원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
 -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 마. 기타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개인택시 3부제 : 개인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개인택시의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개인택시를 3개조로 구분하여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행하는 운영형태
8.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하자 아니하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운영하는 행위 및 운송사업자가 이를 방치하는 행위
9.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 서울시내버스 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행위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한다.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3조의 규정 위반
2.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 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 위반
4. 개인택시 3부제 위반 : 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
5.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법 제15조의 규정 위반

6. 부면허 개인택시 : 법 제5조의 규정 위반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 법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 위반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제6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업체명·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 ②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8조(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2008.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전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20>

제2조(신고 및 포상기준) ① 누구든지 법을 위반한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1. 법 제2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의 금지등을 위반한 행위
2. 법 제73조,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으로 사용한 행위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차(일명:콜밴)를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행위
4.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
5. 삭제 <2004. 12.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하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폐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월간 포상금 합계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③ 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영업)행위 7만원
2.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행위 7만원
3. 용달화물자동차(일명:콜밴) 여객운송사업행위 5만원
4. 불법택시대리운전행위 7만원
5. 삭제 <2004. 12. 20>

제3조(신고자)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20>

② 제1항에 의거 신고자가 위반사실을 신고 할 경우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시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한 후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부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04. 12.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4. 12. 20>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 위반 과태료(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2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66
----------	------

제안년월일 : 2009. 3. 27.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간결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에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행위와 대여자동차 업종위반행위를 신설함(안 제3조).
- 포상금 지급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수정함(안 제4조제2항).
-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행위와 대여자동차 업종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을 신설함(별표 제1호).
- 용어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수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9조).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

2. 운송사업자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인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치 받아 운행도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밴형화물자동차(콜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제3조제1항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 : 법 제81조의 규정 위반

8.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 영업)행위 : 법 제34조의 규정 위반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별표 제1호의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1호]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비 고
1.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0,000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200,000	
3. 개인택시 불법 양도 · 양수	300,000	
4. 법인 · 개인택시의 승차거부	50,000	
5.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	
6.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기준 위반	50,000	
7. 자가용 유상영업	70,000	
8. 대여자동차 업종위반	70,000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 2. 운송사업자 :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생략) 4. 법인택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생략)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밴형화물자동차(콜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p>제2조(정의) ----- ----- 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 ----- 2.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 ----- 3. (원안과 같음) 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 ----- 5. (원안과 같음) 6. -----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 ----- 7.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p>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한다.</p> <p>1. (생략)</p> <p>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 위반</p> <p>3. ~ 6.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② (생략)</p>	<p>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p> <p>-----</p> <p>1. (원안과 같음)</p> <p>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p> <p>3. ~ 6. (원안과 같음)</p> <p>7.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 : 법 제81조의 규정 위반</p> <p>8.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 영업)행위 : 법 제34조의 규정 위반</p> <p>② (원안과 같음)</p>
<p>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원안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③ (원안과 같음)</p>
<p>제9조(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p>	<p>제9조(환수) 거짓 -----</p> <p>-----</p> <p>-----</p> <p>-----</p>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 style="margin: 0;">[별표 제1호]</p> <p style="margin: 0;">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위반 행위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포상금액(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1.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1,000,000</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200,000</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3.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300,000</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50,000</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5. 무면허 개인택시</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100,000</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6.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기준 위반</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50,000</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u><신 설></u></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u><신 설></u></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u><신 설></u></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u><신 설></u></td> <td style="padding: 5px;"></td> </tr> </tbody> </table>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비 고	1.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0,000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200,000		3.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300,000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50,000		5.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		6.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기준 위반	50,000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위반 행위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포상금액(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1.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1,000,000</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200,000</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3.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300,000</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50,000</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5. 무면허 개인택시</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100,000</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6.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기준 위반</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50,000</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u>7. 자가용 유상영업</u></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70,000</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u>8. 대여자동차 업종위반</u></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70,000</td> <td style="padding: 5px;"></td> </tr> </tbody> </table>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비 고	1.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0,000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200,000		3.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300,000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50,000		5.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		6.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기준 위반	50,000		<u>7. 자가용 유상영업</u>	70,000		<u>8. 대여자동차 업종위반</u>	70,000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비 고																																																					
1.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0,000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200,000																																																						
3.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300,000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50,000																																																						
5.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																																																						
6.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기준 위반	50,000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비 고																																																					
1.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0,000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200,000																																																						
3.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300,000																																																						
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50,000																																																						
5.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																																																						
6. 밴형 화물자동차 화물기준 위반	50,000																																																						
<u>7. 자가용 유상영업</u>	70,000																																																						
<u>8. 대여자동차 업종위반</u>	70,000																																																						